

이번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2005년 12월 현재 관계 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로 표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은 관련법률 또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 12.



I.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세제 · 부동산

- (1) 종합부동산세 강화(★) / 3
- (2) 재개발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 3
-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4
- (4)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 5
- (5)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5
- (6)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 6
-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7
-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7
- (9)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8
- (10)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 8
- (11) 어린이용품 · 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 9
- (1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 도입(★) / 9
- (13) 승객예약정보(PNR) 제출(★) / 10

-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10
- (15)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11
- (16)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 11
- (17) 지방세법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시행(★) / 12

2. 금융

-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14
-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14
- (3)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15
- (4) 기업공시제도 개선 / 16
-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17
- (6)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18

3. 산업 · 에너지

- (1)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정비 / 19
- (2)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 19
- (3) 전기요금 조정 / 20

(4)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 21

■ 4. 농림·어업

-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 22
-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 23
- (3)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 23
-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 24
- (5)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24
- (6)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25
-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 25
-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6
- (9)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 26
- (10)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 27
- (11)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 27
-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28
- (1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 28
- (14)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 29
- (15)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29
- (1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30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 31

(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 31

(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 32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32

(2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33

(22)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 33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 33

(2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 34

(25) 갯벌 체험행사기준 제정·시행 / 35

(26) 바닷물의 인·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 35

(27)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 35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36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 36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 37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 37

■ 5. 교 육

(1)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 / 38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38

-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 39
- (4)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기준 강화 / 39
-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 40
-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 40
-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 41
- (8) 선도·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 / 41
-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42

■■■ 6. 의료·복지

-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43
-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 43
- (3) 건강보험료 3.9% 인상 / 44
-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 44
-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 45
-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45
-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46
-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 46
-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 47
-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 48

-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49
-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 50
-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 50

■■■ 7. 환경

-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51
-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51
-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52
-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 53
-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 54

■■■ 8. 노동

-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 55
-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 55
-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 56
-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 56
- (5) 공공훈련기관 개편 / 56
-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 57

■■■ 9. 중소기업

-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 58
-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59
-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 60
-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 60
-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 61

■■■ 10. 행정·법무

-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 62
-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62
-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 63
-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 64
-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 64
- (6) 주민소송제도 시행 / 65
-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66
-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 67
- (9) 출국금지제도 개선 / 67

■■■ 11. 국방·병무

-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 68
-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 68
-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 69

- (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 69
-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 69
-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 70
-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 70

■■■ 12. 남북경협

-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 / 71
-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 / 72

■■■ 13. 안 전

-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73
-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73
-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73
-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 74

■■■ 14. 기 타

-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 75
-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 75
-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 76
-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 76
- (5)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 / 77

Ⅱ.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 ◆ 재 정 경 제 부 / 81
- ◆ 교육인적자원부 / 90
- ◆ 과 학 기 술 부 / 99
- ◆ 통 일 부 / 102
- ◆ 법 무 부 / 105
- ◆ 국 방 부 / 108
- ◆ 행 정 자 치 부 / 111
- ◆ 문 화 관 광 부 / 120
- ◆ 농 림 부 / 123
- ◆ 산 업 자 원 부 / 138
- ◆ 정 보 통 신 부 / 141
- ◆ 보 건 복 지 부 / 144
- ◆ 환 경 부 / 155
- ◆ 노 동 부 / 167
- ◆ 여 성 가 족 부 / 179
- ◆ 건 설 교 통 부 / 186
- ◆ 해 양 수 산 부 / 195

- ◆ 기 획 예 산 처 / 204
- ◆ 국 가 보 훈 처 / 205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208
- ◆ 중 앙 인 사 위 원 회 / 209
- ◆ 금 융 감 독 위 원 회 / 212
- ◆ 국 가 청 령 위 원 회 / 215
- ◆ 청 소 년 위 원 회 / 216
- ◆ 관 세 청 / 218
- ◆ 조 달 청 / 222
- ◆ 병 무 청 / 223
- ◆ 중 소 기 업 청 / 230
- ◆ 농 촌 진 흥 청 / 238
- ◆ 특 허 청 / 240
- ◆ 소 방 방 재 청 / 242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 248
- ◆ 기 상 청 / 252
- ◆ 산 림 청 / 253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세제 · 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 2110-2933)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은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이며 변칙적인 세 부담 회피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단위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주택 9억원 → 6억원, 비사업용토지 6억원 → 3억원)하고 과표적용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소 높아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낮아 부동산가격안정과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미흡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과표적용율을 높여(매년 10%p, 06년의 경우 20%p) 2009년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주택의 경우 약 16만세대로서 전체주택보유세대의 약 1.6%수준입니다.

❖ 종합합산토지 과세대상자 : 약 11만세대

(2) 재개발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10-2178~84)

 현행 재건축 · 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부동산 급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

- 1세대3주택자(A+B+C)가 1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2주택(B+C)과 1입주권(A)이 된 상태에서 1주택(B 또는 C)을 양도하더라도 3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중과(60%)하고
- 1세대 2주택자(A+B)가 1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1주택(B)과 1입주권(A)이 된 상태에서 주택(B)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201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16년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02-2110-8156), 국토정보기획팀(02-2110-8466)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4)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02-2110-8151)

 2006년 3월부터는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때에는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가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가 되며,
-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공익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해당됩니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부채부동산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02-2110-8151)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에 있어 왔음)

- (부과대상사업) 도시지역 300평(특별시·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을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등입니다.
- (적용시점) 2006년 1월 1일 인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부담금 부과·납부) 사업 준공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시·군·구에서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입니다.

- 개발이익은 당해 부과대상토지의 사업착수시점부터 사업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정상 지가상승분(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상승분)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6)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02-2110-8151)

 2006년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됩니다.

- 과거에는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적절한 이행담보 수단이 없어 이를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하는 등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경제를 좀먹는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제도 확립에 솔선수범한 국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기반으로 생활 하던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토지의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분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허가구역내에서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주로 농업인의 농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 취득가능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득가능 지역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및 그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합니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행정자치부 지적팀(☎2100-3884, 3899, 390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됩니다.

- 시행기간 : 2006. 1. 1-2007. 12. 31(2년간)
- 대상부동산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
- 절차 :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
 - 대장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부동산소재지에 직접 가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
 -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서 그동안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2110-8172~4)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 신고 받아 양성화합니다.

-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됩니다.
-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2월초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현재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구매한도를 설정('95년)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반영할 필요

	1995년	2004년	증감율
내국인 출국자수(만명)	415	883	112%
1인당 국민총소득(불)	11,432	14,162	24%
소비자물가지수('00년=100)	82.3	114.7	39%

- 구매한도 제한으로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해외 구입 유발요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출국내국인이 여행에 필요한 선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년째 30억불대 적자인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관세청 통관기획과 (☎02-481-7841)

 주요 수입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여 요건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요건신청 및 세관신고를 이중으로 함에 따라 물류지체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 평균 1일 단축
- 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연간 600여억원 절감 효과 기대

 이로 인해 민원 편의 획기적 제고 및 전자통관체제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관세청 통관기획과 (☎02-481-7841)

 불량 어린이용품 수입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위해 및 마약류원료물질의 불법 수입 사례 발생으로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요건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수입 통관전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합격여부를,
-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 어린이용품 및 마약류 불법 수입 사전 차단으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 도입(★)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경사항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관세법 제225조 제1항 후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신고 중요사항은 시행령에 규정(관세법시행령 제232조 제2항) 하였습니다.

○ 신고 중요사항

- 신고인의 주소 또는 성명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밀수방지 등 보세화물의 안전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 승객예약정보(PNR) 제출(★)

관세청 특수통관과 (☎02-481-7835)

 승객예약정보(PNR : Passenger Name Record)란 선사/항공사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탑승에 관한 정보로서 지불형태, 전체적 여행일정, 동행자 등의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세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선사, 항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승객예약정보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2항)
- 승객예약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사전에 지정된 세관공무원에 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3항)
-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없는 처리 및 제공을 금지토록 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4항)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승객예약정보의 보존기한을 정하도록 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5항)

 승객예약정보를 활용한 비노출 우범여행자 추출 등 정보 분석 강화로 고위험자만 선별검사하고 검사비율은 지속 축소하여 여행자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일괄납부사후정산기간을 업체 스스로 1월, 2월, 3월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 일괄납부 사후정산업체의 일괄납부기간은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분기로만 운영함에 따라, 국내구입 원재료에 비하여 수입원재료 비율이 낮은 업체는 3개월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월별로 업체가 선택적으로 일괄납부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이로 인해 사후정산기간을 분기로 운영함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장기간 보류됨에 따른 불이익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기간을 월(1월, 2월, 3월)단위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또는 과소환급금의 환급시 그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현행 100원에 1일 5전(연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연 14.235%)로 하향 조정

- 관세법상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율과의 형평성 고려

 이로 인해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관세환급신청을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동안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소요량심사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신청업체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세관에만 환급신청하도록 하였으나,

- 인터넷 환급신청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의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통관지세관 등)에서도 원하는 세관에서 환급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인천공항세관을 환급지세관으로 추가 지정

 이로 인해 수출업체별로 관할지 세관이 아닌 통관지세관 등 편리한 세관을 선택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환급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100-3920

 개인간 주택 거래시에 거래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 적용함
 - ❖ 취득세는 2%→1.5%(▲0.5), 등록세는 1.5%→1%(▲0.5)를 각각 적용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과약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됩니다.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됩니다.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됩니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함
 -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지관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됩니다.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됩니다.

- 원전 피해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수요 대처 및 응급과세 원칙에 따라 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 (0.5원 / kwh)함
 - ❖ 국회 상정중(의결·공포시 '06. 1월 시행예정)

2. 금융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 02-2110-2435)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에 한해 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범위내(발행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0억원까지)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

- ❖ 영업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판매 가능

 이로 인해 간접투자자의 펀드접근성과 펀드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간접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10-2415)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02-1588-656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460-2405~6)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저해, 재정부담 증가 초래 등 부작용을 노출함에 따라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6.1월 시행)

- 보증이용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이용기업, 5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장기 보증이용기업, 자체 신용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 비율 인하 등을 통해 보증이용을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 고액·장기·우량기업의 보증축소를 통해 확보된 보증여력은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될 것이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부분보증비율 등을 우대 적용할 것입니다.
- 대부분 85%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보증비율도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평균 부분보증비율 수준을 점차 인하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평균 1%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보증료율은 07년까지 1.5% 수준으로 점차 인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02-2110-2631~4)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과 범죄의 예방을 위해 2006.1.18부터 새로이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고객알기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계좌의 신규개설과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이외에 아래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도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개 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 국 인 : (개인, 법인의 신원확인사항 이외에) 국적, 국내 거소

○ ‘계좌의 신규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공제계약,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등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 ‘2천만원(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 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액현금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도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이 되는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라 함은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해당되나 회계상의 가치이전만이 이루어지는 거래(예 :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해당여부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지급액과 영수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백만원 이하의 송금·환전, 공과금 수납/지출 금액 등은 합산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액알기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용으로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기업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02-3771-505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3786-8461)

 외환위기 이후 기업공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공시의무사항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상장부담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05.11월 현재 공시의무사항은 외환위기 이전 대비 유가증권시장은 2배, 코스닥시장은 25배 증가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 폐지
-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

 현행 상장기업이 공시서류를 평일(월~금)은 07:00~21:00, 토요일은 09:00~14:00 까지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평일(월~금)은 07:00~18:00까지, 토요일은 공시서류의 접수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일부 상장기업이 평일 야간(18:00-21:00)이나 주말(토요일) 시간대를 이용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함에 따라 공시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시정

○ 공시서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공시시한을 일원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요경영사 항의 신고	○ 평 일 : 07:00~21:00 ○ 토요일 : 09:00~14:00 ❖ 부득이한 경우 익일 07:20까지	모든 공시서류의 제출가능 시간을 ○ 평일 : 07:00~18:00 ❖ 다만, 마감시간 후 제출 (18:00-19:00)이 가능하 도록 하되 공시서류를 단순보관 후 그 다음 근무일(금요일 마감후 제출한 경우 다음 월요일) 에 접수처리 및 공시 ○ 토요일 폐지
유가증권신고서 5%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기타	○ 평일 07:00 ~ 17:30 - 다만 21시까지 제출은 가능(익일접수처리) ○ 토요일 : 09:00~14:00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수요를 흡수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내증시의 국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뉴욕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업중 외국기업수의 비중이 10% 이상이나, 우리의 경우 외국기업의 상장이 전무

○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주요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외국기업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02-3786-8224)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이 복잡, 대기화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과다납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각 보험회사가 과오납 보험료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환급 대행 서비스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하여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02-2110-2497)

 2005. 7. 1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실수요자의 취득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 신고실적 : 2005. 7.1이후 총 23건(735만불, 11월말 기준) 신고

○ 이는 주로 취득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하여 여전히 편법·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상적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체재요건 심사시

○ 장기체류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전입증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먼저 외국에 2년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필요시 실제 체재확인서를 제출토록하여 사후입증토록 하였습니다.

❖ 한국은행의 내부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해외거주요건'을 완화

현행 심사기준	개정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였거나 체재할 목적 • 2년이상 체재요건 심사시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전에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년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 등 제출

3. 산업 · 에너지

(1)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정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대표준과 (☎02-509-7285)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 없이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하였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인증으로 통합정비 하였습니다.

- 인증제도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평가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
- 현재의 인증제도에서는 시제품 상태에서 인증을 받더라도 공공 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 해소

 이로 인해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조달청 목록정보팀 (☎042-481-7165)

 공공부분에도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물품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3) 전기요금 조정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발전용 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4.591% →3.7%)를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전체 평균 1.9% 인상하였음에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교육용은 16.2% 대폭 인하
- 이미 시행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강화
 - 100kWh 이하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81%(61만 가구) 추가혜택 전망
 - 유족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5,500여명 혜택 전망
- 양극화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업용(갑)(계약전력 300kWh 미만), 주택용 200kWh 이하, 농사용은 동결

○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법령으로 특정가능한 일부 업종*)에 한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도매배상사업자의 집배상시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술연구시설

○ 다만, 주택용 201kWh 이상 1.8%, 산업용(을),(병) 2.8%, 일반용 1.9%, 가로등 2.5%, 심야전력 9.7%*) 인상

❖ 소비자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2차례로 나누어 단계적 인상: '05.12.28일 5%, '06.7.1일 4.7%

 이와 관련 소비자물가 0.027%p, 생산자물가 0.056%p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본부 (☎02-504-7331)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또는 공제조합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제(ESCROW)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원 미만의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위 의무 적용을 제외합니다.

4. 농림·어업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5년 10월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8년 자경후 이농시 소유농지 : (현행 1ha →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없이 소유 가능

❖ 상속농지 : (현행) 1ha →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3ha까지 소유 가능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 농지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수탁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수탁관리사업은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은 차단할 계획입니다.

❖ 최소 수탁규모 : 농업진흥지역 내 1,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미만

❖ 수탁기간 : 5년 이상, 계약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 징수

○ 그동안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용대)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농업인이 농지구입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가 어려웠고, 고령농가의 이농에 따른 농지 임대수요 및 농업인간 임대차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 대응에 애로가 있어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 개정에 의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희화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농업인에 임대되도록 관리하는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농지 등을 위탁하여 농업인·전업농·농업법인 등에게 5년이상 임대하게 되면 농지유동화 촉진 및 임대차의 활성화 등으로 농지시장이 안정되고,

○ 임대농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의 이·탈농 지원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 3가지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2006.1.22일부터는 이를 1/4로 개선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며, 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

(개선)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며, 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참여가 일정수준이상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농업 참여가 어려워 농업경영 규모 및 전문화가 어려웠습니다.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농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농업경영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지유동화로 고령·영세농가의 이·탈농을 지원하고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2)

 2006.1.22부터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하여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처분명령의 유예기간중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을 하게되지만, 처분명령의 유예기간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는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 통지(1년)

① (성실경작·매도위탁) 처분명령유예(3년) → 유예기간경과 → 처분의무소멸

② (단순 매처분시) 처분명령(6월이내) → (처분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이는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한 경우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와 내용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민원 발생이 많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로 처분통지를 받은 후 당해 농지를 처분하고자 한국농촌공사에 매도를 위탁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한 농지처분명령 대상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부터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와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농산물 소비감소·개방확대 등에 대응하여 생산을 강제하지 않도록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발적인 휴경사유를 확대할 경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말농원사업(3천㎡미만), 관광농원사업(2ha 미만)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단독주택(1천제곱미터 미만), 수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2003.1.1.)으로 모든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이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이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보다 완화되어 있어 관리지역 행위제한과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조정될 경우 농촌관광 등 소득·편의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촌개발 촉진·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일부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그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농지조성사업과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높은지역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상한제도 도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 지금까지 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게 하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 농지조성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왔습니다.

- 또한 현행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원가 기준으로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부담이 과중하고, 농지조성비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가격이 낮은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촉진되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부터는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일 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4일→(개선)2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처리기간은 현지조사 등을 감안 4일이내로 하고 있으나,

○ 현지조사가 불필요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4일만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2006.1.22부터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게 됩니다.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 ❖ 미국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 (현행) 1ha → (개정) 3ha
-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하고,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 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 RPC, APC 등의 농지전용규모를 1ha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시설 설치가 제한되었고, 농산물 주산지에서 농업생산자 단체의 판매시설 설치도 제한되는 등 문제 발생되었던 것을 완화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증대,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9)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1.22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개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종 구분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축사관련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0)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직되게 운영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2006.1.22부터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규모 : 1ha → 2ha

❖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 직권해제 : 0 → 1ha미만

 시·도지사가 1ha미만의 진흥지역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부터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 → 모든 녹지지역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는 변경협의 →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협의
- ②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 농지전용면적 제한 : (현행) 7단계 → (개정) 5단계
 - ❖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면적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 3~10ha → (개정) 3~20ha
- 그동안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변경협의 경우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권한위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대폭 반영한 것입니다.

 전용허가기준 정비, 전용심사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용심사의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며, 위임범위 확대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절차축소를 통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육료(보육시설) : 0세 155천원, 1세 154, 2세 127, 3-4세 79, 5세 158
- 교육비(유치원) : (3-4세) 국공립 28천원, 사립 79 (5세) 국공립 56, 사립 158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2006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 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도 만5세아의 경우 매월 최고 15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 '06 연령별 지원단가(1인/월)

(1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2006년 1월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 등의 여성농어업인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 지원금액은 만0~1세 77천원, 2세 63천원, 3-4세 40천원, 5세 79천원을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젊은 여성의 농어촌거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이 '05.11.5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가 강화 됩니다.
- 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어야 하며,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도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여성농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정책이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7)

-  2006년 1월부터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 영농도우미는 65세 미만,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 사고(농작업, 농기계, 교통사고 등)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되며, 도우미 임금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역농협(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 또는 편조손가정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역농협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농가를 파악하여 도우미를 연계 지원하게 됩니다.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일손을 대행해 줄 도우미 역할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농림부 농지과 (☎02-500-1672)

 2006.4월부터는 부채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등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에 부속한 유리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 등에게 장기 재임대하고,

- 임대기간 중에는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당해 농업인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는 유익한 제 도입니다.

- 현재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경영회생지원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영위기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채규모 축소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자산유동화를 통해 경영회생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98)

 소비자(농업인) 보호와 종자의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종자는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대상은 2006.1.1일부터는 우선적으로 주요채소종자 14품목(고추·당근·무·배추·상추·수박·시금치·양배추·양파·오이·참외·토마토·과·호박의 씨앗)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모든 종자(씨앗·묘목·버섯종균 등)를 그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표시의무자는 종자를 일정한 댓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자판매업자로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방법은 개별상품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모범적으로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과 예산지원 또는 포상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하여 종자구입시 농업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종자 유통의 선진화 및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종자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7)

 2006년부터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 그동안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직접지불금에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왔는데, 인센티브 지원단가는 유기재배의 경우 ha당 270천원, 무농약은 150천원 이었으며, 논 저농약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 내년부터 논에 대해 지원해오던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도록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에따라 논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초기 진입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원단가 >

- 저농약 : ('05) 미지급 → ('06) 217천원/ha(신규)
- 무농약 : ('05) 150천원/ha → ('06) 307천원/10a(157천원 인상)
- 유 기 : ('05) 270천원/ha → ('06) 392천원/10a(122천원 인상)

(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8)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합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됩니다.
-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관리하고, 농업인 및 유통업자는 반드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06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유통(APC, RPC, 도매업자)·판매(소매업자)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소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농산물에 이력추적품 표시를 하며,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2005년부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 읍면지역과 시지역중 녹지지역, 특별시·광역시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04년 22%에서 30%로, '05년 30%에서 40%로 확대한데 이어 '06년부터는 50%로 추가 확대 실시
- ('03)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22)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3~4)

-  2005년 12월부터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제와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의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의 수의학제가 1998년에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2005.12.1일 현재 개정 전 수의사법에 의하여 이미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와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외국 수의과대학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1)

 2005.9.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 9. 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내년 10월부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별표1. 1. 가. (8). (나)]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별표1. 1. 가. (2). (나)]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
-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1. 1. 가. (11). (나)]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가]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 유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나]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서 2007.1.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 예외: 주표시면이 30cm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원 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됨.[별표1 제1호가목 (8) (가)의 규정, 제1호가목 (10) (가) 1) 및 2)]

(2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년부터 농정환경의 변화와 농업기반공사의 기능 혁신에 맞추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도 조정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게 됩니다.

❖ 농지은행사업: 농지시장안정과 농지유통화 정보의 제공, 농지의 매매·임대 등의 사업

- 공법인의 신뢰도 제고와 투자인프라 구축 등 해외사업을 위해서 명칭중에 「한국」을 포함하여 국적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지시장 안정 기능은 취약한 점을 개선 하였습니다.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충실하면서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여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 농지은행사업의 도입으로 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 갯벌 체험행사기준 제정·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02-3674-6783)

 2006년부터는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제한됩니다.

- 그동안 패류채취, 갯벌마라톤 등 각종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해 갯벌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6) 바닷물의 인·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2-3674-6574)

 일반음식점이나 횡집, 활어 도·소매점들이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동 음식점등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거나 배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일반음식점, 횡집등에서 고정된 관로로 대규모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바닷물 이용자와도 형평성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2-3674-6653)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됩니다.

- 우선,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됩니다.

 이를 통하여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06년 예산 412억원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3674-6622)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전체 도서민에 대해 '05. 9. 1.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 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항로에는 최고 운임제를 도입하여 정률지원 및 선사의 자체할인을 20%를 차감

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합니다.

❖ 관련 '06년 예산 50억원(지자체 부담분 별도)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과실 (☎02-3674-6311)

 2006년부터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동안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은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형선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선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674-6814)

-  2006년도 영어자금은 '05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1조 5,05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게 되어 수산물 생산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원활한 출어자금 지원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4. 1. 1 이후 어업인(수협,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포함)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3%로 인하되고,
-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 또는 어업재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되는 피해복구용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  또한 2004년 전·후에 수산물 유통·제조·가공업 등 비 어업인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도 현행 연리 4.5% 내지 5.5%에서 4%로 인하하게 됩니다.
 - ❖ 금리인하에 따른 연간 이자 경감액은 약 17억원 (관련 '06년예산 2억원)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2-3694-6913)

-  2006년부터 연근해어업종 근해안강망·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연안자망·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하여 어구실명제가 실시됩니다.
- 그동안 어업자들이 바다에 어구를 부설할 때 어구표지만 설치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어구표지에 실명을 기재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해자망 및 연안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어구사용량도 제한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사용량만 바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교육

(1)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현행 월1회 실시했던 주2일 수업제를 확대하여 월2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육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통해 감축 영역 및 수준결정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1,672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50% 지원 목표에 따라 전년도 81천명에서 75.3% 늘어난 142천명(61천명 증)에게 2,336억원을 지원하고,
-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지원은 32천명에서 384% 늘어난 155천명(123천명 증가)에게 1,550억원을 지원하며,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취원시 둘째아 이상 10,000명에게 58억원을 지원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 초·중·고생 신체검사가 앞으로는 병원 건강검진으로 변경됩니다(학교신체검사규칙폐지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 마련)
- 매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대체
-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음
- 전체학생 대상이 아닌 초교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 학생이 대상(그 외 학생은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등 실시)
- 검진결과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비용은 전액 학교 부담

(4)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 질 기준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 👉 신축학교에 실내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이 2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학교보건법시행규칙 등 개정)
- 학교신축 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및 책·결상 사용 제한
- 이미 개교한 곳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동안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
- 10년 이상의 노후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
- 👉 학교 신축 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3호 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예정
 - ▶ 2009년까지 3,300명 배치 예정
-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2008년부터 배출이 됨으로 인하여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자 함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과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마련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연간 1,000명 내외의 전문상담교사(2급)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556)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경우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합격해야,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 시험에 대한 부담감 해소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이로 인해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치르는 데 대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들의 부담감이 해소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료와 동시에 고등학교졸업학력을 인정 받은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 (☎02-2100-8555)

 2005년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46개소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으로 100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 전국 46개소(2,350명) → 전국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100개소 5000여명 지원예정(예산 152억원, 지방비 50%포함)
 - 평일 : 오후 3시-저녁 10시, 토요일(등교일/휴무일) : 정오-저녁7시/아침9시-오후4시, 일요일 : 미운영
-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특기적성 교육·급식(석식, 간식)·건강검진·고민 및 진로상담·부모교육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적 격차 보완, 학습능력 향상 도모, 진취적 기상 함양, 범죄·비행 노출 예방 도모
 - 사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 공적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부수 효과 기대

 이로 인해 주5일 수업제 확대(내년 3월부터 월 2회)에 따라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체계적 공적 서비스 기여가 예상됩니다.

(8) 선도·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

청소년위원회 보호기획팀 (☎02-2100-8617)

 지금까지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소속 학교장 및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도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 원인제공 청소년 중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소속 학교장(학생인 경우)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이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2100-864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접촉·노출행위”와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됩니다.

- 청소년에게 피해가 심각한 각종 변태적 성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점을 감안
- 성인에 비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위계·협박에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상습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제도와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제도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천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식별이 어려워 상습적 성폭력범이 이웃에 거주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
 - 상습적인 아동 성폭력범들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관리·열람함으로써, 범죄억제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범죄에 미리 대처 가능
- 학교, 학원 등에서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범하는 성범죄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워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점을 감안
 -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과 교육기관의 강한 청소년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일정 기간 차단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의료 · 복지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 설>

-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대상자 발견시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
 -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 지원
-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시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120 → 130%로 완화하여 2006.7.1부터 시행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변경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변경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06.7월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116천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및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됩니다.

○ 보험료

<변경전>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
-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31%

<변경후>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48%

 보험료 3.9% 인상을 통해 2008년까지 급여율 70%이상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2005. 7월 발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11.15일 합의한 수가인상을 3.5%와 2006년도 보장성 확대(약 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1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

<변경전>

- 직장·지역 공히 임의가입 형식

<변경후>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당연적용토록 함
- 지역가입자 : 기존 임의가입 유지

 이로 인해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전>

-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변경후>

- 무소득 간주 규정 삭제

 이로 인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효과를 제거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59)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변경전>

- 건강검진 미실시

<변경후>

- 건강검진 실시 확대

 이로 인해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권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변경전>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본인부담금을 공단과 검사를 받은자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

<변경후>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100분의 80을,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

 이로 인해 특정암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88)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합니다.

○ 처방전 보존기간

<변경전>

-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변경후>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이로 인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이상도 가능토록 완화 및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변경전>

- 지원대상 : 800개소
- 시설기준 : 사무실 16 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 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변경후>

- 지원대상확대 : ('05) 800 → ('06예산안) 902개소
- 시설기준 완화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31 일로 연기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60개소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 선정),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시설무상임대 사용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자격에 미달하는 기존 종사자에게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이용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 및 시설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변경전>

- 지원대상 : 60세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변경후>

- 지원대상확대 : ('05) 60 → ('06예산안) 80세대
- 시설기준완화 :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32세대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선 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무상임대 사용

 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 친화적인 그룹홈 운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09)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규정이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에 미흡하고 국제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EU, 일본 등 제외국 규정과 Codex 규정에는 면제사항에 해당되는 일부 원재료만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양성분 표시대상 확대 :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영양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에 대하여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원재료명 표시 확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확대 등 대폭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계에서 수용가능한 유예기간(1년 6개월)을 설정하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양표시양식(식품등의 표시기준 2005-12호 [도2])을 제시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계량기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하고, 시험항목으로 성장,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시험(계량컵에 한함)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어린이의 내용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확하고 검증된 투약기를 사용하여 어린이 의약품의 정확한 용량의 투약으로 치료목적 달성 및 과량투여 등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가능.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02-380-1699)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정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고시하였습니다.

- “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 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이저용 제품” 및 “의치 부착재”를 의료기기로 관리함에 따라 당해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토록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킴.

7. 환경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차령이 2006년부터 강화 적용됩니다.

○ 정밀검사 대상차령의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검사 대상 차령이 강화되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기존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변경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정밀검사)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4년), 기타(3년)

- 사업용 자동차 : 승용(2년), 기타(2년)

❖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함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광역시까지 확대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록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2006년부터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광역시 등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시행지역 : 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확대 시행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해당 시·도의 조례제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종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시 정부는 차종·장치별로 장치 가격의 70%~95%를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하에서 차량 잔존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차종-장치별 소유자 부담액>

차종별	부착장치	장치비용	자부담액	
RV	DOC	100만원	30%	3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30만원	
소형승합	DOC	100만원	30%	3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30만원	
중·소형 화물 (총중량 3.5톤 이하)	DOC	100만원	10%	1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10만원	
대형 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엔진 개조	436만원	5%	22만원
	대형 DPF	700만원	5%	35만원
	중형 DPF	651만원	5%	33만원
	복합 DPF	-	5%	-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대기과), 인천시(환경보전과), 경기도(대기관리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환경부국 생활공해과(☎02-2110-6814)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관련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 주거지역, 학교·병원·도서관 인근 50m 이내에서 특정공사 시행시 공사 개시전 방음벽 설치 의무화
-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대하여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
[주거지역(주간) 70dB → 65dB, 기타지역(주간) 75dB → 70dB 등]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
 - 연간 4회 위반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

1) 특정공사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한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 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함.

 건설 공사장의 소음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 $\mu\text{g}/\text{m}^3$)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환경부 생활공해과 (☎02-2110-6818)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04.5.30 시행)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3일 전까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종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함
- 입주민에게 측정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고 기준 마련('06.1.1 시행)

구 분 \ 오염물질 항목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10	30	1,000	360	700	300

※ $\mu\text{g}/\text{m}^3$: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공기 부피 1 m^3 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무게)를 의미하며 1 μg (마이크로그램)은 10⁻⁶g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시공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사전예방적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

-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인하하고, 청량음료, 주류 등의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요구 반영
 - 먹는샘물은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6.75%로 인하
 -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인하
 - 기타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도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
 - 톤당 38원에서 수도물 이용요금인 약 690원 수준으로 조정
-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노동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실 (☎02-507-4083)

-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조정 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10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활용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504-2054)

-  '06.1.1부터는 근로자를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됩니다
- 걱정업무 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던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가 오히려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
-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로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02-503-9749)

 현행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 3만5천원이었으나 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게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나,

- 그동안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전직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실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공공훈련기관 개편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503-9754)

 새로운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공공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을 개편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선도기관으로 육성
 -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기업·근로자·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 출제시스템 혁신·종목관리체계 정비 및 자격검정 R&D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 개도국 등에 대한 해외직업훈련 용역사업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

○ 기능대학은 종합훈련기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육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합
- 제조업분야 기능·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지식기반산업에서 지식근로자 양성기관으로 전환
- 중·소도시 소재 소규모기관에서 다수 캠퍼스를 가지고 경제 권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기관 및 개인 평생직업생활을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개편

 향후 공공훈련기관 개편 세부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02-503-9759)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교육 훈련기회가 1/6수준이며, 극히 초보적인 교육훈련이 일반적

❖ 직업훈련 경험비중(노동패널조사, '04년) : 비정규직(2.3%), 정규직(14.8%)

○ 특히 고급기술 중심의 기술변화에 따라 핵심인재 위주의 고용 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지원 강화 추진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기회 확대

-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지원
- 근로자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근로자수장지원금 지원비율을 우대(50-80%→80-100%) 지원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06년 하반기)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43)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 (1) 종전에는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

- (1)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하도록 구분하였음.
-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3)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우회출자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

- (1)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종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었던 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었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었던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 2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3)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042-481-4377)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에 따라 혁신형 기업을 중점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시중금융 이용 가능한 우량기업 등은 지원 제한
-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를 차등화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자금운용 도모
- 기술평가 표준모형을 도입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기술 평가를 강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
-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재심제도 등 수요자의 편의 도모
- 정책자금 One-Process 지원방식, 소액자금의 간편 대출제도 도입 등 지원절차 간소화 도모

 이러한 개편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66)

 현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를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등 실질적인 구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매목표비율 설정방안 :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목표 최소비율을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50%이상으로 설정
 - 공공기관별 구매 목표비율은 물품·공사·용역 구매특성별로 설정
 - 목표 미달시 조사 및 개선권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의2)

 현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조달청 구매제도팀 (☎042-481-7217)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77)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의 구매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의한 입찰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시 중소기업자간의 지나친 입찰경쟁으로 인하여 적정이하 수준의 낙찰이 다발
- 수주 중소기업 및 관련 업종 전반의 경영애로 발생, 수주한 중소기업의 납품품질 저하 및 저가 수입품 납품, 계약이행 포기 등의 문제 발생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모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06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 결정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77)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가능(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하였으나,

- 대형 공사의 발주, 건설사의 수주 및 하도급에 의한 재입찰 등으로 공사 실질가격 하락
- 하도급 수주기업에 의한 공사용자재 입찰 등에 따라 주요 생산 중소기업체는 적정수준 이하의 자재가격 하락, 불리한 납품 및 결제 조건의 계약 체결, 중소기업건설사의 부도, 폐업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 등의 경영애로 발생
- 저가수주 중소 자재생산 업체의 품질미달 자재 납품, 저가 수입 제품의 납품 등에 따른 공사품질저하 등 악순환 발생 가능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모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가 가능한 제품(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제품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구매(친환경상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제품 등은 1천만원 이상)

10. 행정·법무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 (☎02-3480-7635)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노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지출절약 예산성과금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시 기관의 해당 사업예산에서 절약액을 감액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기관의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상당부분 기여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제도 실무추진단(☎02-751-1469)

-  2006년 7월 1일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1~3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됩니다.
-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 확대를 위해 공무원간에 부처구분 없이 경쟁하는 공모직위 도입
 - 성과가 계속해서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가능
 - 장관은 부처 소속에 상관없이 책임자를 임용제청 할 수 있고, 중앙인사위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시에만 실시
 - 매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 책정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과장급 등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실시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핵심인재인 고위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 고위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고위공무원단체도를 도입·시행하여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향상에 주력해 오고 있음.

 공무원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02-751-1405)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급 기관의 성과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무성적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비율이 근무성적은 70~95%, 경력은 5~30%로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규정에서는 근무성적 50~70%, 경력 20~30%이었음.

○ ‘경력’의 경우 현재는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고 30% 범위 안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5% 까지 낮추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위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근무성적’을 최고 70% 밖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부처의 업무성격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돼 일선 부처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커짐.

 연도초, 연도중, 연도말 등 성과관리 단계별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평가자가 평가대상 공무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종전에 비공개로 처리하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02-751-1199)

-  공무원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는 2세를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있어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공직임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02-751-1217)

-  민간근무 휴직 대상 요건을 만45세에서 3급 과장은 50세, 4·5급은 4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 민간근무 경험을 활용할 일정 기간의 필요성 때문에 연령요건이 필요하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령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 있음.
- 공무원들의 휴직기회를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가 기대됨.
-  휴직절차를 간소화·위임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 계획 공고, 기업 채용신청 등을 인사위 주관으로 실시하여 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음
- 일부 절차를 부처에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
-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가 특별한 부작용 없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대상과 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제도 운영으로 민·관간 상호이해 및 발전도모라는 목적의 제고가 기대됨.

(6) 주민소송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2100-3755)

 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
-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
 - ❖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 제기 불가
-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하였습니다.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1유형),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2유형),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3유형),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4유형)으로 구분

 앞으로, 주민소송제도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2100-3762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적으로 변경됩니다.

- 2005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에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이와 별도로 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수준을 매년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
-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의정활동비는 시도 의원은 매월 150만원이내, 시군구 의원은 110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7, 별표8의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지자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선거권이 있어야 함

○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연임 불가

❖ 시행령 개정 중이므로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음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2-4127)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종전 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초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 발생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면책신청기간 초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출국금지제도 개선

법무부 출국관리과 (☎02-503-0941)

-  출국금지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 출국금지대상자의 구체적 예시
- 출국금지대상자 심사결정시 차별소지 항목 삭제
- 출국금지통지 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 출국금지사실 확인규정 신설
-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논란 이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국방·병무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인터넷에 의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휴일 예비군훈련 대상 확대, 쌍용훈련기간을 단축토록 하였습니다.

- 현행 1차 보충훈련소집통지서를 인편에 의해 전달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개선(미신청시 등기우편/인편전달)
- 현재 2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수임군 부대별 1개소로 확대 운용
- 쌍용훈련의 훈련기간을 3박 4일에서 1,3군에 대해 2박 3일로 축소하고 증편규모를 연대에서 연대별 1개 대대로 축소

 예비군의 편익증진 및 생업보장으로 대군신뢰를 증진시키고 실습위주 예비군 훈련체계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국립현충원 관리과 (☎02-905-6110)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사회에 공헌한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안장대상을 국무회의 대신 민·관 합동안장대상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 현행 안장대상자인 순직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외에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
- 안장제외요건을 완화하여 '97.1.1 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은 안장에서 제외하던 것을 모든 상이군경에 대해 안장을 허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중 단순생활사범의 경우는 안장을 허용
- 안장대상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민·관안장대상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국가발전공헌자, 의사상자 및 순직/공상공무원으로 넓히고 화재진압/인명구조중 순직 및 그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심의 없이 안장
- 군·경 합동안장식은 월 7~8회 시행에서 월 2~4회로 줄이고 군·경 개별안장식을 1일 3회 시행

 국가·사회 유공자 우대 및 생계형 단순생활사범 안장 허용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민·관합동안장대상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국방부 인사관리과 (☎02-748-5111)

 장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출산하기 위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 휴직 적용대상

-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자녀(휴가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
- 여자군인이 임신·출산하게 되어 필요할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

❖ 군인사법(제49조) 개정(개정안 국회상정 중) 후 시행('06년 초 예정)

 이는 국가의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여성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병무청 선병국 선병과 (☎02-481-2948)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군복무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 및 의학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객관적·세분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145cm이하 5급, 140cm이하 6급)
- 신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제도 도입
-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현행규정 적용

 이로 인해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병무청 총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여 귀국신고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도 폐지로 귀국신고 불이행에 따른 부담감 해소 등 민원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병무청 총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  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현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간연장허가에 필요한 신청을 하여야 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기간연장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종전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제도를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신속한 국외여행허가 업무 처리로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병무청 동원소집국 동원과 (☎042-481-2792)

-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을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게 2박3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 동원훈련기간이 2박3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훈련 참가자는 종전대로 3박4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주둔지 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13군 지역은 일반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조정
- 훈련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불만 해소 및 업무·생업공백 최소화
- 훈련기간 단축으로 훈련 경비 및 재영시설 운영 비용 절감
-  이로 인해 훈련참가자간 형평성 제고되어 훈련부담이 줄어듦으로써 민원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남북경협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

통일부 경협제도팀 (☎02-2100-59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05.5.31, 시행 2005.12.1)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공포 2005.11.30, 시행일 2005.12.1)하여 남북경협제도 관련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 3인 이상의 참여기회를 개방하여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신고·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기재사항 대폭 생략)으로 대체,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를 1매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방문증명서 반납규정을 삭제하여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북한

방문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문기간 연장신청 근거를 마련 ▲북한주민접촉신고의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인터넷 사용 확대에 따라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신고제 도입 ▲반출·반입승인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남북협력사업승인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협력사업자 및 사업 동시승인 범위 확대(총 투자액 300만불 이하→1,000만불 이하) 등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를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

법무부 출국관리과 (☎02-503-0941)

-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2005. 12. 1.부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
-  남북한간 대규모 왕래에 대비하는 측면과 함께 왕래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안 전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46)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 부여 등 9개 지자체 지역에서 태풍·홍수 등 발생시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시범지역 :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 시범사업기간 : 2006년~2008년(3년간)

❖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 현행 : 복구비 기준액 30~35%

- 제도 시행 후 : 최대 90% 보상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33)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고지원절차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 차별을 해소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33)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등급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을 설정합니다.

- ❖ 상한 : '06년 3억원, '07년 2억원, '10년 5천만원
- ❖ 하한 : 30만원 미만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 지원대상 기준을 폐지,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농림분야 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지원 규모도 더 크므로 농어업간 보조비율을 동일화
- 복구비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02-2100-5294)

-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안전문화 정착차원에서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 및 수시로 준수계도 및 전국적 일제 합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 ❖ 적발시 과태료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14. 기 타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 (☎02-2110-2853)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가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 영농활동만 가능하도록 된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관광휴양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 확대
-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 산지가 많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보전산지, 국유림 편입비율 등)
- 박물관·미술관이나 묘목을 키우는 종자업 등 유사한 성격의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예사 또는 종자관리사 공동고용을 허용(특례적용 前 : 1인 고용 의무화)
-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 적용 배제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손쉽게 농민주 제조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에만 허용되는 원어민 교사의 외국어 교육을 전학교로 확대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가 일괄 의제처리됩니다.

○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의 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조달청 정보기획팀 (☎042-481-7135)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이용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 '02년 10월 나라장터 개통 이후 조달정보화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연간 100억원 상당의 운영비용이 소요

- 나라장터 이용이 폭주하여 시스템의 용량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앞으로는 운영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6년도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
- 부과대상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1건당 20,000원을 2006.1.1부터 부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발생된 수입은 모두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여 고객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3)

-  현재까지는 문자 위주의 ‘정성적 예보’를 발표하여 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km×5km의 격자점으로 나누어 각 격자점마다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각 격자점에 대해 기온·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정량적이고 다양한 형태(그래픽·시계열·도표·문자·음성·격자점 등)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상예보

- 각 격자점의 정량적 기상예보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수문, 농업, 산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

 디지털 예보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되며 향후 기상방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기상청 기후국 기후예측과(☎02-2181-0844)

 현재까지 계절예보는 1년에 4회, 계절별로 2월·5월·8월·11월의 하순(23일경)에 발표하고 있으나, 2006년 4월부터는 매월 20일경에 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에 대한 장기예보(3개월 예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장기예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과 각 산업분야에서의 상품 생산량 조절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 추세
- 장기예보를 매월 연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대국민 기상서비스 개선

 3개월 예보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재관련 기관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되어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042-481-5399)

 종전에는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확정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도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내용에 의하여 후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06년 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출원 공개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이 증가
- 비밀상태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선의로 그 기술을 발명한 제3자의 특허권 획득기회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

 앞으로는 출원공개 전에 특허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후출원에 대한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 다만,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된 때에는 그 일방 또는 제3자에 의한 동일 발명의 재출원 방지를 위하여 선출원 지위 유지
- 미국, 일본, EPO 등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공개되지 아니한 출원의 기술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동일발명을 개발하여 후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